

## 책임시수 및 시간교육비 지급 규정

제정 1997. 03. 01    개정 2000. 08. 01  
 개정 2003. 03. 01    개정 2006. 03.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09. 06. 01  
 개정 2009. 09. 09    개정 2013. 08. 26  
 개정 2014. 08. 25    개정 2015. 08. 24  
 개정 2016. 02. 04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2. 09    개정 2019. 02. 11  
 개정 2019. 06. 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및 초과 시간 교육비(중전‘초과강의료’) 및 강사의 시간교육비(중전‘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시수) ① 전임교원의 교과 강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2학점(이론 1시간 1학점, 실험·실습은 2시간 1학점으로 계산) 기준으로 하되,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개정 2016. 2. 4,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2. 9, 개정 2019. 6. 24)  
 ② 전항에 불구하고 보직 등으로 인한 책임시수 가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2. 9) (개정 2009. 3. 1, 개정 2009. 6. 1, 개정 2013. 8. 26, 개정 2014. 8. 25, 개정 2015. 8. 24)  
 ③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책임시수는 주당 9시간, 강사의 책임시수는 주당 6시간으로 한다.(단,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책임시수를 감하거나 추가(3시간 까지)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1., 2019. 6. 24.)

제3조 (초과시간교육비의 대상) ① 전임교원의 초과시간 교육비 지급시수 기준이상의 일반(이론) 강의나 실험·실습강의<별표 1>  
 ② 학급편성인원이 25명 이상인 1, 2학년 반 및 전공지도교수 지도시간(학기 시간표 C·S)으로 1교수 학기별 총 30시간 이내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정한 시간  
 ④ 교과목의 특성상 특별 초빙에 의한 국내외 저명인사의 초빙 강의  
 ⑤ 학칙시행세칙 제15조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시수는 초과시간교육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 2. 9)

제4조 (강사 시간교육비의 대상) ① 외래교수의 시간교육비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 강의를 담당할 자에게 실지 강의한 시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간교육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4.)  
 [제목개정 2019. 6. 24.]

제5조 (시간교육비 계산기준) ① 전임교원의 실험·실습 강의는 일반강의의 50%로 계산하되 학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 ② 강사의 실험·실습강의는 일반강의의 100%로 계산한다. (개정 2019. 6. 24.)
- ③ 시간교육비는 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2. 9)
- ④ 시간당 수강인원이 150명이상일 때 30%, 200명이상일 때는 50%를 해당시간 교육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시간 교육비 지급액) ① 초과 시간교육비 및 강사 시간교육비 지급 기준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9. 9)

- ② 강사의 경우 ①항의 지급액 외에 숙식제공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9)
- ③ 전임교수의 계절학기 및 평생교육원 강의료 지급 기준액은 <별표4>와 같다.
- ④ 외래 초빙자의 특별지도, 강의, 강연 등에 대한 시간교육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별표 1, 2, 3, 4의 변경 시에는 내부결재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동대학교 책임시수 및 시간교육비 기준액

시행일 2019. 03. 01.

개정일 2019. 06. 24.

**(별표 1) 전임교원 책임시수**

번호	보직 구분	책임시수	비고
1	부총장	3학점	
2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대표(사장)	6학점	지도교수 미부여
	해외취업본부장, 미래전략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학생복지처장, 입학홍보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교육처장, 창업지원단장, 전산정보원장, 온사람교양교육대학장, 평생교육대학장, 간호대학장, 의료생명보건대학장, 캠퍼스 교무·학생복지부처장		
3	중앙도서관장, 부처장, 학부장, 4차 산업융합 아카데미학장, 산학협력단 분단장, 전산정보실장	9학점	
4	1 ~ 3에 해당하는 보직자 이외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12학점	
5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수	6학점	
6	비정년트랙 교육연구중점교수	6시간 이하	
7	비정년트랙 교육취업중점교수	12시간	

- ※ 총장 승인 특별 직무수행자의 책임시수는 내부결재로 정함
- ※ 총장 부재시 직무대행자의 책임시수는 3학점으로 함
- ※ 간호학과 소속 교원은 간호인증평가 기준을 준용함
- ※ 산학협력·교육연구·교육취업중점교수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보직에 해당하는 책임시수를 적용함
-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책임시수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임교원 책임시수에서 50% 이상 감면 적용한 시수임. 다만, 전임교원 책임시수에서 30%이상 감면한 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음 (신설 2019. 6. 24)

**(별표 2) 초과 및 강사 시간 교육비 지급 기준**

NO	내 용	지 급 기 준	
		초과 시간교육비	외래교수 시간교육비
1	국경일·가정학습·천재지변	보강의 경우지급	보강의 경우지급
2	특강·교내행사	지도 시 지급	지도 시 지급
3	공무출장·공가·연가·특별휴가	보강의 경우지급	보강의 경우 지급
4	현장실습 및 실무연수, 반지도교수시간(C.S), 사회봉사활동	지도 시 지급	미 지 급
5	시험기간	감독시간에 의한 계산 지급	감독시간에 의한 계산 지급

**(별표 3) 전임교원 초과 시간교육비 및 비전임교원 시간교육비 지급액**

구분	초과시간교육비	교육비(시간당)	교통보조비(주당)	비고	
전임교원	10,000				
비전임교원	겸임 등	52,000			
	외래강사	A형	52,000		설악권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B형	52,000		설악권외
		C형	총장이 별도지정		총장이 별도 지정하는자

※ 시간당 수강인원 150명이상(30%), 200명이상(50%) 일때는 해당시간 교육비에 가산하여 지급함.

**(별표 4) 계절학기, 평생교육원 강의료 : 학점 × 시간당 교육비(26,000원) × 15일(별도책정)**